

피폭방사선량 분기보고 현황 안내 (2000년 2/4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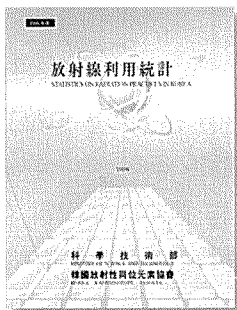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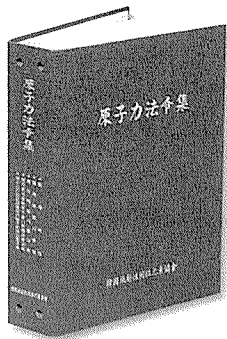
2000년도 2/4분기 피폭방사선량 분기보고가 지난 7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원자력법의 개정으로 그동안 판독업체를 통해 보고대행해 오던것을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직접 보고를 하게됨에 따라 업무에 다소 차질을 우려하였으나 대다수의 허가기관들의 협조로 보고가 순조롭게 이루어 졌습니다. 다음 분기에는 판독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보다 철저한 준비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편, 접수된 피폭방사선량 분기보고 내용중 방사선 작업종사자에 대한 신상변동사항에 대한 미입력과 선량값의 단위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직까지 피폭방사선량 분기보고를 하지 않은 기관은 조속한 시일내에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담당자: 정보관리팀 임기중)

(2000.8.21일 현재)

	2/4분기 보고대상기관	접수된기관	미사용기관	사용중지기관	사용폐지기관	미보고기관
기관수	876	586	56	34	17	183

※ 참고 : 원자력관계사업자가 규정된 날짜까지 피폭방사선량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원자력법에 의거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원자력법령집 및 방사선이용통계 책자 발간



협회는 2000년도에 개정이 완료된 원자력법령집(담당자:박태진)과 방사선에 대한 다양한 통계를 수록하고 방사선이용통계(담당자:최윤석) 책자를 독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부분을 개선하여 제작하였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천년에 맞는 산뜻한 디자인과 효용성에 주안점을 두고 제작된 금번 책자들을 협회는 회원사와 유관기관등에 배포하였다.

(이용통계 책자는 추후 발송예정)

앞으로도 협회는 회원사의 방사선관련업무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책자를 계속해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RI통신교육 실험실습 실시



'00년 RI통신교육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724(월)부터 823(수)까지 실험실습교육이 실시되었다.

실험실습교육은 방사선/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방사선원 취급·관리능력을 향상시킬뿐만 아니라 RI취급자일반면허 시험을 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고 있다.

- RI통신교육 수료기준 : 수료시험 - 50점, 실험실습교육참석 - 40점, 과제물(답안지)제출 - 10점 총점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득점한 자만 수료할 수 있으므로 통신교육을 수료하려면 반드시 '실험실습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교육방법 : 본 실험실습교육은 강의와 실습의 비율을 1:2로 하며, 실습위주로 하여 수강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3일간에 걸쳐 총 18시간동안 실시된다.

2000년도 종사자교육 추가 실시

협회는 2000년도 방사선작업종사자교육을 1,858명의 기존 종사자와 614명의 신규종사자를 대상으로 '00. 2.11(금)부터 '00. 7.21(금)까지 실시 하였다. 하지만 기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교육일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협회는 다음과 같이 교육일정을 추가로 신설하였으니 원자력관계사업자(허가기관)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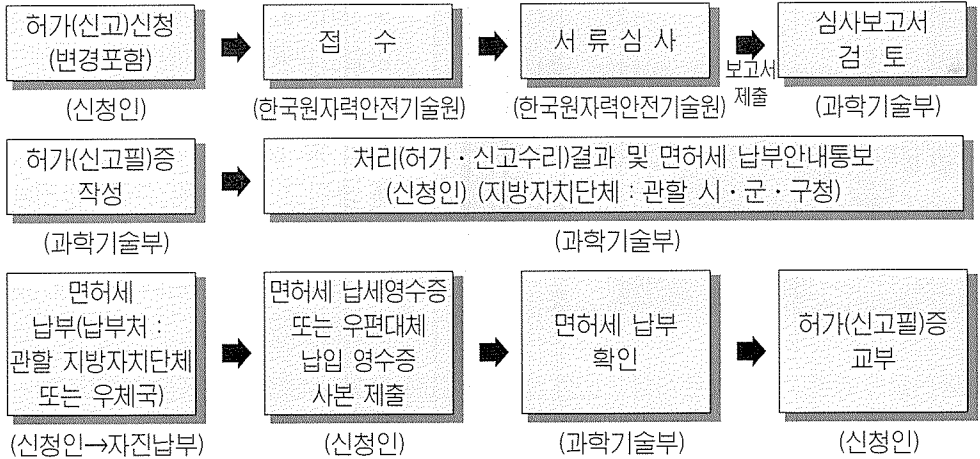
■ 교육일정

구 분	교육 일정	교육 장소	교육 인원
종사자 (6시간)	9.27(수)10:00~17:00	도시개발공사 8층	50명
	10.25(수)10:00~17:00		50명
	11.22(수)10:00~17:00	협회 강의실	50명

- 교육신청 : 2000. 9.15(금)까지 교육훈련신청서 및 위탁교육생명부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FAX를 이용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육비는 교육 실시전까지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빛은행 : 833-076021-13-001, 예금주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협약소식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이동사용·판매 (신규 및 변경)허가(신고필)증 교부절차



◎ 관할 시, 군, 구청에 직접 면허세를 납부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에서 우편 대체 무통장 납입청구서에 의해서 납부하실 수 있으며 납부시에는 청구서 하단 “면허세”란에 “4종107호,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및 판매” 라고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 군, 구청 지방세 징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사 항

■ 지방세(면허세) 납부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160조 내지 169조, 동법 시행령 제124조 내지 제130조〉

● 지방세법 (제9절 면허세)

제160조(정의) ①본 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 행위를 말한다.〈개정 73.3.12〉

②본 절의 규정의 사용에 있어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2년이상에 걸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1일에 그 면허를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67.11.29〉

제161조(납세의무지등) ①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세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와 건축허

협희소식

가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건축허가에 있어서 시설변경 등으로 증가되는 허가서류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개정 76.12.31 법 2945>

②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별은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2>[전문개정 74.12.27]

제164조(세율) ①면허세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93.12.27 법 4611, 94.12.22>

구 분	인구50만 이상시 및 자치구 아닌 구가 신설된 시	기타시	군
제 1 종	45,000원	30,000원	18,000원
제 2 종	36,000원	22,500원	12,000원
제 3 종	27,000원	15,000원	8,000원
제 4 종	18,000원	10,000원	6,000원
제 5 종	12,000원	5,000원	3,000원

②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시의 동지역은 시로, 읍 면지역은 군으로 보며, “인구 50만이상 시” 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신설 94.12.22>

③광역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지역은 이를 군으로, 그 밖의 지역은 이를 시로 본다<신설 95.12.6>[전문개정 90.12.31]

제165조(납부) 면허세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8.4.6>

1. 신규면허(면허의 부여 또는 변경을 말한다)에 대한 면허세는 당해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조례의 정하는 납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9절 면허세)

제124조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법 제1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0.7.29>

[별 표]

면허세로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분

<제4종>

107.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및 판매
10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 가공사업 및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
109. 방사성폐기물의 저장 처리 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 운영
110. 방사선량피폭판독업